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2019.1.6.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019.2.1.

정부의 지역개발 역량강화 지원정책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2019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회컨설팅 및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디자인 관리는 작년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한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별로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개발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 또한 낮추어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자치구에서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도 확대되는데, 이에 따라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허가기준 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활발한 주민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